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공청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재정투자조사부

2016. 01. 19

목 차

Section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소개	01
1) LIMAC의 설립배경	03
2) LIMAC의 기능 및 성과	04
3)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기간	05
4)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	
Section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공청회	
1)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	06
2) 수수료 산정 공청회 목적	07
Section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1)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08
2)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2015년) 및 문제점	10
3)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	13
4)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15
5) 부가수수료 산정기준	17
6)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 사례	18
7) LIMAC 조사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	19

Section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소개

- 1) LIMAC의 설립배경
- 2) LIMAC의 기능과 성과
- 3)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기간
- 4)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배경

○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투자사업의 중요성 증가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규모가 중앙재정의 지출규모를 넘어서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성 커짐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에 크게 미흡한 자주재정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
-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보면(2015년 예산기준), 전체 지출의 80.1%(138조 7,210억 원)가 정책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약 20%가 행정운영경비(24조 7,453억 원)와 재무활동(9조 7,927억 원)에 사용됨
-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지방의 자본투자사업이 차지하며, 자체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됨

○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조사

-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1992년부터 도입
- 2005년 12월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 관련제도의 도입·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배경

○ 기존 투자심사의 타당성조사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기관 자체선정, 용역에 의한 갑을 관계에 따른 조사결과의 객관성 문제
 - 수요를 과다 추정하거나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등 타당성 조사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의 자체 산정 B/C와 감사원 재산정 B/C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작 가능성 제기
 - 지자체, 돈 안되는 사업 '경제성'조작해 사업진행 [2015.10.15 기사]
- 타당성 조사기관의 전문성 문제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의문
 - 사회적 할인율(5.5%), 분석기간(30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미준수 사례 다수
 -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혼동사례 다수
 - 2008~2015년(N=2,385) 중앙투자심사 자료 분석: (BC 결과) 0.1~14.43, (할인율) 1.75%~11%, (분석기간) 상이함

○ 최근 투자심사 결과의 경향

- 적정판정 비중 급감(2008년 44%→2015년 9%), 미통과 판정 급증(2008년 13%→2015년 36%)
- 2011년 이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엄격한 판정결과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기능 및 성과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설립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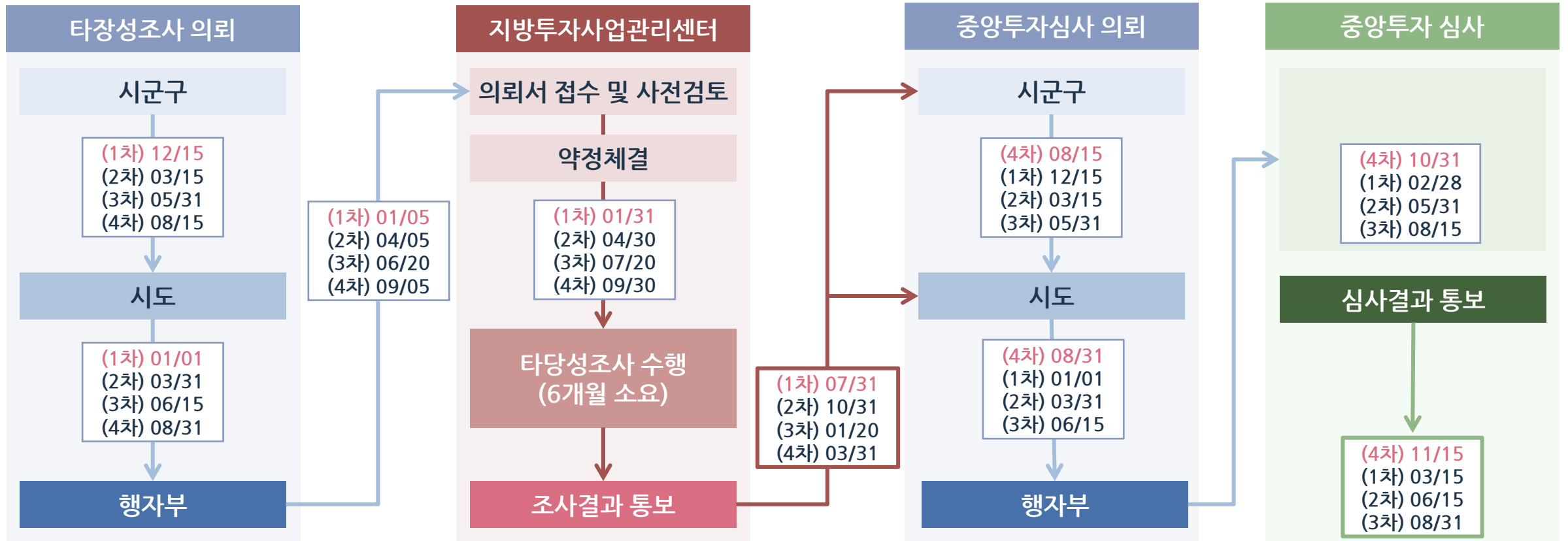
- 국민세금의 금전적 가치(VFM)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
 - ▶ 중앙정부투자사업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유사한 기능
- 2014년 12월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행자부 지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주요 업무: 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②타당성 재조사, ③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 투자 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④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지난 1년간 LIMAC 의 성과

-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사전에 차단되고, 사전검토 강화(33건 의뢰사업 중 15건 반려, 18건 조사 수행)
 - ▶ 2015년 7건 완료, 2016년 1월 현재 11건 이월되어 진행중
 - ▶ 2016년 1차 조사의뢰 사업 13건, 현재 검토중
- 또한, 종전에는 전체의 88%*가 타당성 조사의 편익/비용비(B/C) 값이 1 이상이었으나, LIMAC 타당성 조사에서는 7건 중 1건에 불과
 - ▶ * '08~'15년 중앙투자심사에 제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
-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재검토 사유에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출한 쟁점과 정책적 분석의 내용을 적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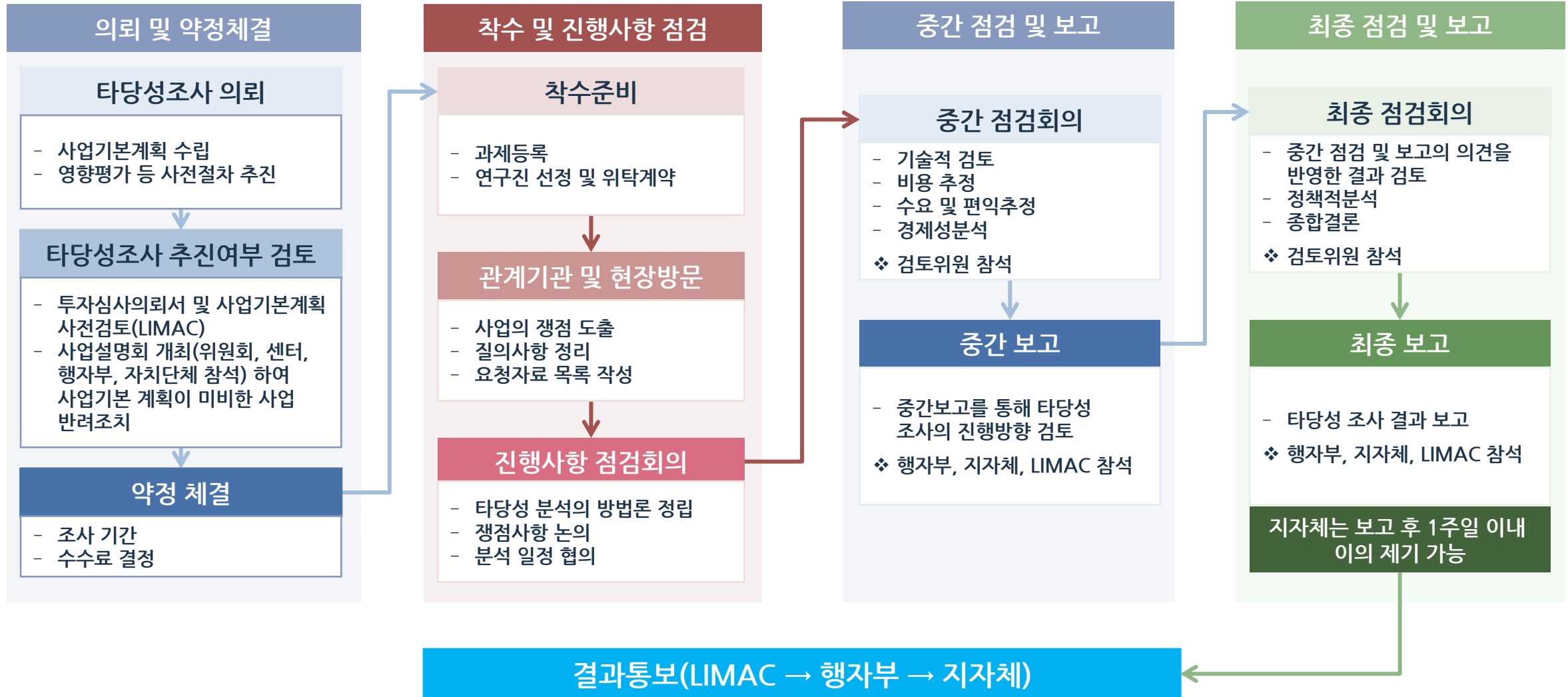
3)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 기간

- 1차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 그 해 4차 중앙투자심사 가능



4)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

○ 표준 타당성조사 수행일정 및 절차



Section 2. LIMAC 수수료 산정 공청회

- 1)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
- 2) 수수료 산정 공청회 목적

1)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
 - 제12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자치부, 2015)
 -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결정
- 2015년에는 시·도의 일회성 출연금과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LIMAC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수수료만으로 타당성 조사/재조사, 지침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지원

2) 수수료 산정 공청회 개최 목적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 및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사 사업 수수료 산정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 2016년 LIMAC 타당성 조사과제의 수수료 기준(안)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및 반영

Section 3. LIMAC 수수료 산정기준

- 1)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 2)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2015년) 및 문제점
- 3)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
- 4)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 5) 부가수수료 산정기준
- 6)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사례
- 7)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

1)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타당성 조사의 개념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 조사 추진체계

- LIMAC 내부연구자로 PM(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학계·연구소·민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외부연구진 필요 이유: 다수의 연구팀의 참여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 이때 외부 연구진은 전공, 연구분야, 타당성조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한 연구진 선정
- LIMAC은 직접 분석 수행 및 외주 결과 검토, 각 조사과제간 일관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지침 및 방법론 개발 등 조사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 총괄
 - LIMAC은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내부에서 모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향후 감사, 여론,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음
 - 외주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새로운 학문 및 방법론 도입을 통해서 분석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외주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타당성 조사 분석내용 및 수수료 체계

- 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은 A.사업계획서 검토, B.기초자료분석, C.경제성 분석, D.정책적 분석, E.종합평가 등 5개의 모듈로 구성됨
-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비용 재추정, 설문조사, 교통수요추정, 특수한 기술성 검토, 감정평가, 환경성 검토,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기타 법률자문 등
- 따라서 LIMAC 수수료 체계는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하여, 주요 분석내용 5개의 모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에 반영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
 - (기본 수수료) 타당성조사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수수료에 반영
 - (부가 수수료) 사업규모, 사업복잡성,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수수료 부과



2)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

○ 2015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 (기본수수료) 건당 9천 5백만원 기준
- (부가수수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

유형	분석방법	금액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용가치 추정설문·FGI,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25~50 백만원 소요
산업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대상 설문조사·FGI, 직접효과 공간계량분석, 산업시설 외 시설별 효과추정·FGI,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요 평가모델 분석,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FGI 등 	
문화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수요추정(델파이 등), 이용객대상 설문조사·FGI,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FGI 등 	
지차단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착수이후의 계획변경에만 해당(별도협의)

2)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

○ 2015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 (총수수료) 상기 기본 및 부가 수수료를 합한 총 수수료의 개략적 추정은 사업규모, 사업복합성,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복합성 및 조사 난이도		
		단일시설·사업	2개 이상 복합기능 시설·사업	복합도시개발 및 복합단지 조성
사업 규모	1천억원 미만	95백만원	95~130백만원	-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95~130백만원	130~160백만원	150~180백만원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30~160백만원	150~180백만원	180~220백만원
	1조원 이상	-	180~220백만원	220~300백만원

2)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

○ 약정에 의한 수수료 확정: 수수료의 경직성

- 타당성조사의 특성상 과제별로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LIMAC에서는 약정체결시에 사전적으로 해당 조사 수행시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 외주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총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법률자문 비용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음.
 - 산업단지 설문조사 3000개 이후 유효표본 부족으로 재설문이 필요한 경우
 -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평가는 법정수수료로 수행 이후 비용 확정
 - 조사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 인한 법률 자문 비용

○ 타당성 조사 사업별 수수료 금액의 격차 존재: 정확한 예측 곤란

-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되며, 부가수수료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LIMAC에서 책정하여 약정단계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 LIMAC 홈페이지에 사업복합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9500만원~3억원까지의 총수수료 금액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1년간 조사 수행경험 결과,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책정기준 필요
-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수행 경험상 총사업비 규모에 선형적으로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용역발주 건수와 금액에 따라 증가하므로 총사업비 규모보다는 사업유형 및 정형화 정도,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부가수수료 구체화

3)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

○ 난이도를 고려한 기본수수료 현실화

- 타당성 조사의 난이도(상, 중, 하)에 따라 기본수수료 차별화: 난이도는 정형화 정도로 판단
 - 난이도 (上) :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복합단지, 복합도시개발)
 - 난이도 (中) : 정형화가 보통임(복합청사, 철도,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환경시설, 항만)
 - 난이도 (下)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일반청사)

2015년 기본수수료

- 일률적 적용(0.95억원)

2016년 기본수수료

- 조사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0.95~1.2억원)

○ 난이도별 기본 수수료 차등화 원인

- LIMAC 타당성조사는 복합청사, 산업단지,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관, 도시개발사업 등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이 정형화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약 60%)
 - 편익항목 자체의 설정부터 수요추정의 범위까지 개별사업별로 연구진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난해한 사업이 다수임.
-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60%)하고, 비교적 이들의 방법론은 정형화 되어 있음

3)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

○ 사업유형/추가분석 필요여부 등에 따른 부가수수료 구체화

- 2015년 LIMAC 타당성조사 수행경험을 통해 부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화
 - 예 1) 타당성 조사18건 중 10건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무성 분석을 회계법인에 의뢰
 - 예 2) 용지보상비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를 넘거나, 용지개발 및 분양사업과 같이 용지보상비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사전표본평가”를 의뢰, 또는 기존 감평자료 존재시 사후감평 수행
 - 사전표본평가의 법정수수료가 사후에 확정되고, 사업별 차이(300~3200만원)가 크기 때문에 약정당시에는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2015년 3차 사업부터는 약정금액에 미포함(실비정산하는 것으로 약정)
 - 예 3) 용지개발 및 분양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등) 은 기반시설 공사와 상부시설 공사를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용역 의뢰
 - 기반시설은 토목관련, 상부시설은 건축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필요
 - 예 4) 교통수요 추정, 곤돌라 관광수요 추정, CVM을 통한 편익추정, 산업단지 수요추정을 위한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와 같이 전문적인 수요 및 편익 추정 필요시 용역 의뢰
 - 예 5)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내용이 관광, 주택, 상업, 산단, 대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복합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수요 및 편익추정이 시설유형별로 필요
 - 예 6)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장대터널, 선박 안전성 등), 환경성 검토(소음 실측, 오염원 분석 등 1차 데이터 수집 필요시)가 필요한 경우

4) 2016년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 기본수수료 원가 내역

- 타당성조사는 학술용역(+R&D)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수수료의 원가는 크기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됨
- 인건비: 직접적인 내부 인건비(45% 내외)
 - 인건비 단가: 행정자치부 '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6.1.5.) 적용(참여율50%기준임)
 - 내부인력의 인건비는 조사사업 수행기간 6개월 기준, 참여비율은 12.5%(인당 연간 4건 수행 기준)
 - 책임연구원은 과제당 1인 기준
 - 연구원은 ①쟁점사항 분석, ②비용검토, ③수요·편익검토, ④ 정책적 분석 중 지방재정영향 각 1인 기준(총 4인)
 - 연구보조원은 ①기초자료 분석, ②경제성 분석, ③ 정책적 분석 중 지역낙후도, ④지역경제파급효과 각 1인 기준(총 4인)
 - 보조원은 1인 기준, 참여비율은 30%(인당 연간 3건 수행)
- 경비: 외주용역비, 회의비(자문비용 포함, 품질관리비용), 여비, 유인물비, 교통통신비, 전산처리비 및 기타
 - 외주용역비는 2,500만원 포함(25%내외)
 - 회의비는 품질관리를 위한 서면자문,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 공식회의 6회 기준
 - (사업설명회, 진행사항점검회의, 중간점검회의, 중간보고, 최종점검회의, 최종보고)
 - 엄밀하게는 외주용역비와 회의비의 상당부분은 외부 인건비에 해당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 이내

4) 2016년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 2016년 기본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 조사기간: 6개월 기준
- 조사과제 수수료는 해당 조사과제의 직접 비용만 포함; 단, 정형화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수수료 차등화

단계	난이도	내용	수수료(만원)
기본수수료	상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복합시설, 복합단지 등)	12,000
	중	정형화가 보통임(복합청사, 철도,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시설, 항만)	11,000
	하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청사 등)	9,500

-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조사 의뢰전, 의뢰후 약정체결까지 1~2개월, 또는 완료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 요구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검토 및 회의 등에 일정부분 인력 투입되고 있으나, 미반영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기술료’, ‘노하우’에 대한 보수 미반영
- 난이도별 기본수수료 차이: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습, 지침 개발, 다양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 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비용들을 조사 수수료에 반영

5) 부가수수료 산정기준

○ 유형별 부가수수료 : 사업량/사업비/유형 등에 따라 추가용역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기준으로 별도 부과

단계	유형	내용	수수료(만원)	비고
부가 수수료	①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1,500~2,500	특이 사항 에 따라 변동 가능
	②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	시설별 1,000~1,500	
	③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1,000~2,000	
	④	• 사업규모가 큰 경우(ex.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지가 광범위할 경우	1,000~1,500	
	⑤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장대터널, 안전성 검토 등),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500~1,000	
	⑥	• 용지개발 분양사업과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이 분리되어 추가용역 필요한 경우	1,500~2,500	
	⑦	•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수요 조사), CVM 설문조사 등	500~3,000	
	⑧	• 기타 쟁점(법률 검토, 민원 관련 인터뷰 등) 등 특이사항	300~1,500	
	⑨	• 사전표본평가 및 사후 감정평가	실비정산	
	⑩	• 해외사례 또는 관련 자료 획득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한 경우	500~1,000	

6)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 사례

공공청사

- 2015년 기준 : 0.98억원
- 2016년 기준 : [기본수수료(下) 0.95]+[⑤특수한 기술성 검토(내진설계) 0.05]=1억원

도로

- 2015년 기준 : 1.2억원
- 2016년 기준 : [기본수수료(下) 0.95]+ [①수요·편익추정 0.25]=1.2억원

마리나
항만

- 2015년 기준 : 1.6억원
- 2016년 기준 : [기본수수료(上) 1.2]+[①수요·편익추정 0.25]+[③재무성 0.1]+[⑥기반/상부시설 별도 0.25]+
• [⑦설문조사 0.1]=1.9억원

산업단지

- 2015년 기준 : 2억원
- 2016년 기준 : [기본수수료(上) 1.2]+[②주택+상업+교육/R&D 수요·편익추정 0.45]+[③재무성 0.1]+
• [④대규모 사업 0.15]+[⑥기반/상부시설 별도 0.25]+[⑦설문조사 0.25]+[⑧법률검토 0.1]=2.5억원

복합도시
개발

- 2015년 기준: 2.2억원(감평비 0.32포함)
- 2016년 기준: [기본수수료(上) 1.2]+[②주택+상업+관광 수요·편익추정 0.45]+[③재무성 0.1]+[④대규모 사업 0.15]+
• [⑥기반/상부시설 별도 0.25]=2.15억원(감평비 별도)

7) LIMAC 조사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

단계	유형	내용	수수료(만원)	비고
기본 수수료	상	•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복합시설, 복합단지 등)	12,000	난이도 고려
	중	• 정형화가 보통임(복합청사, 철도,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시설, 항만)	11,000	
	하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청사 등)	9,500	
부가 수수료	①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1,500~2,500	특이 사항 에 따라 변동 가능
	②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	시설별 1,000~1,500	
	③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1,000~2,000	
	④	• 사업규모가 큰 경우(ex.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지가 광범위할 경우	1,000~1,500	
	⑤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장대터널, 안전성 검토 등),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500~1,000	
	⑥	• 용지개발 분양사업과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이 분리되어 추가용역 필요한 경우	1,500~2,500	
	⑦	•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수요 조사), CVM 설문조사 등	500~3,000	
	⑧	• 기타 쟁점(법률 검토, 민원 관련 인터뷰 등) 등 특이사항	300~1,500	
	⑨	• 사전표본평가 및 사후 감정평가	실비정산	
	⑩	• 해외사례 또는 관련 자료 획득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한 경우	500~1,00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 송지영

Tel. 02-3488-7335 / Email. sjy1001@krila.re.kr